

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5. 8. 12 선고 2015가단337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---

## 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론 종결 2015. 7. 15.

판결 선고 2015. 8. 12.

## 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  
가. 경북 군위군 C, D 지상 붉은 벽돌조 슬라브지붕 단층주택 97.98㎡ 중 별지 도면 표시 i, r, s, i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바)부분 2㎡를 철거하고,  
나. 위 D 대 258㎡ 중 같은 도면 표시 18, g, h, i, j, k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상에 식재된 사철나무 28그루를 수거하며,  
다. 위 D 대 258㎡ 중 같은 도면 표시 k, j, i, h, g, k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(마)부분 4㎡를 인도하라.  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  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## 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## 이 유

### 2. 인정 사실

가. 원고는 경북 군위군 D 대 258㎡(이하 '이 사건 토지'라 한다)를 소유하고 있고, 피고는 위 C 대 374㎡ 및 그 지상 붉은 벽돌조 슬라브지붕 단층주택 97.98㎡(이하 '이 사건주택'이라 한다)를 소유하고 있다.

나. 이 사건 주택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i, r, s, i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바) 부분 2㎡를 침범하여 이를 건축되었고,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18, g, h, i, j, k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상에 사철나무 28그루를 식재하여, 이 사건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k, j, i, h, g, k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마) 부분 4㎡를 점유하고 있다.

【인정근거】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호증, 갑 제2, 3호증(각 가지번호 포함), 갑 제7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### 3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위 인정사실에 따르면,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i, r, s, i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바) 부분 2㎡에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주택을 건축하고 이 사건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18, g, h, i, j, k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상에 사철나무 28그루를 식재하여 이 사건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k, j, i, h, g, k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마) 부분 4㎡를 불법점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, 피고는 원고에게, 이 사건 주택 중 별지 도면 표시 i, r, s, i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(바) 부분 2㎡를 철거하고, 이 사건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18, g, h, i, j, k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상에 식재된 사철나무 28그루를 수거하며, 이 사건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k, j, i, h, g, k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마) 부분 4㎡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.

### 4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조영진

